

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233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3. 8. 14.
4. 회부일자 : 2023. 8. 21.

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2023.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등의 조문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

III. 주요내용

- 2023. 7. 1.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(안 제2조~제4조)

IV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【별첨 5】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비교표
- 법제처 의견제시 안건번호 의견19-0028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【별첨 2】

다. 협의: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 결과: 미 실시 【별첨 3】
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

2) 교육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) 학생인권영향평가: 의견없음 【별첨 4】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33호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총 4개 조문으로, 안 제2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중 ‘교육행정국장’을 ‘안전총괄담당관’으로, 안 제3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」 중 ‘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’을 ‘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’으로, 안 제4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 중 ‘교육재정과장’을 ‘청사이전추진단장’으로, ‘재산관리담당사무관’을 ‘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’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이처럼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난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(2023.5.3.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
 - 교육청이 이미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을 각각의 조례에 신속하게 일괄 반영한 것은 자치법규의 법적안정성과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,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「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